

2] 우선심사 대상 확대(안 특허법 시행령 제9조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

□ 개정 이유

-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의 출원과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빠른 심사 서비스 제공 필요
- 국민의 안전 확보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에 대하여 특허 제도적으로 지원 필요

□ 개정 내용

- 우선심사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시한부 환자의 출원과 재난 등 대형 사고로부터 생명·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추가

< 특허법 시행령 제9조(안) 일부 >

현행	개정안
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. 1.~1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. 1.~11. (현행과 동일) 12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</u> 가. 65세 이상 고령자 나. <u>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</u>
<u><신설></u>	1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각종 사고를 예방·대비하여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

□ 개정 효과

- 고객 맞춤형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

3] 기타 개정 수요 반영(안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)

※ 실용신안의 경우 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

□ 개정 이유

○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*에 대한 특허법 개정(법률 제12753호, '15.1.1 시행) 사항 반영 필요

*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날까지를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규정

- 청구범위를 적는 명세서 보정기한에 관한 특허법 조문이 개정·시행*되었으나 하위법령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(붙임2 참조)

* 특허법 제42조제5항이 제42조의2제2항으로 이동. 내용은 동일

※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판단시 필요('09~'13년 총1건)

□ 개정 내용

○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명세서의 보정기한에 관한 특허법 인용조문 수정(안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)

<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(안) 일부 >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)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“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1. (생략) 가. ~ 바. (생략) 사. 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	제7조의2(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)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“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1. (생략) 가. ~ 바. (생략) 사.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

□ 개정 효과

○ 특허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통한 법령 명확화

□ 특허법 시행령 제8조

제8조(심사관 등의 자격) ① (생략)

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1. 3 (생략)

□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

제28조의4(개방형 직위)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정부조직법」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(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, 실장·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)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)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**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**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5(공모 직위)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(公募 職位)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**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**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

개정 전

제42조(특허출원) ⑤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.

1.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
2.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(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)

개정 후*

제42조의2(특허출원일 등)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.

⇒

* 법률 제12753호